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2015. 11. 1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 목 차 -

제1장 개 요	1
제1절 추진 배경	1
제2절 추진 경과	2
제3절 주요 개선내용	3
제2장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7
제1절 인·허가 등 처리절차	7
제2절 축사 현황측량 절차 및 소요비용	8
제3절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10
제4절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방안	13
제5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및 서류	14
제6절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절차 및 서류	18
제7절 분뇨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절차 및 서류	29
제8절 산지(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46
제9절 방역소독시설 확인 및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51
제10절 현장 사례 및 무허가 유형 등	59
제3장 향후 추진계획	71
 《참고자료》	
1.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주요 문답자료(Q&A)	72
2. 전국 시·군·구 민원실 현황	83
3. 건물시가 표준액 일람표	90
4. 지자체별 견폐율 운영현황	106

제1장 개 요

제1절 추진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7,925호(44.8%)

○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축사시설의 건폐율(20~40%)을 60%까지 확대

**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가축사육 거리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반영

○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 확대

○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요인 교정이 어려운 바, 개정안 발효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 훼손 우려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제2절 추진경과

-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5.7~6.16)
-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법 개정」 대응 TF 구성·운영(‘12.6.25)
- 환경부·농식품부 및 국토부·농식품부 등 부처합동 실무협의(‘12.7.27~11.2)
 - * 환경부·농식품부(‘12.7.27, 8.20), 국토부·농식품부(8.9~8.10), 부처합동(8.30, 10.25, 11.2)
-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 범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13.2.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13.5.31)
 - * 가설건축물 적용 재질 확대 :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 합성수지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 시행 ’15.3.25)
 - * 개정법률안 제출(‘13.5.31), 축산환경관리원 설립근거 신설(홍문표 의원발의, ‘13.11.14),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등 순회설명회(‘14.11.21~27, 1,764명)
- 가축분뇨법 시행령(‘15.3.24) 및 시행규칙(‘15.3.25) 일부 개정
 - * 육계·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조정 등
- 축사지붕 합성강판 허용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15.4.27.)
- 이행강제금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 개정(‘15.8.11)
 - *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발의, ‘14.8.21)
-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처벌유예, 가축분뇨법 개정중(국회 법사위 계류중, ‘15.10.28)
 - * 무허가 축사에 사육을 위탁하는 자에 대한 처벌 3~4년간 유예(황주홍 의원발의, ‘15.1.23)

제3절 주요 개선 내용

가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 (대책) 축산 규모가 축산 규모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 개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 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축사(농지법 제32조) 건폐율을 60%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 시 제한요인으로 작용

⇒ (개선) 132개(82.5%)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월)

* 지자체 권고 5회, ('15.9월) 160개 시·군 중 건폐율 60%인 지자체는 132개소 (82.5%), 50% 12개소(7.5%), 20% 1개소(0.6%), 미 제정 14개소(8.8%)

나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 (대책)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 과다 적용

*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가축분뇨가 적정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후 연장)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가설건물에서 제외

⇒ (개선)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양육실, 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연면적 100m²이상)에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 제11호('13.5.31, '15.4.27 개정)

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 (대책)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어 무허가축사 유지

⇒ (개선) 육계·오리 축사에 대해 아래사항 모두 준수시 처리시설 설치 면제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15.3.24 개정)

- ①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cm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 ②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 ③ 닭·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음

라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 (대책)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

- 한·육우도 젖소와 같은 반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을 허용

*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 (개선) 한·육우에 운동장(1일 8시간 미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허용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소 운동장 면적 : (허가) 450㎡ 이상, (신고) 200㎡ 이상 400㎡ 미만(건축법 시행령 '15.3.24 개정)

마 축사 제한거리 재 설정

- (대책)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 설정
-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11.10월)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 통보('15.3.31, 환경부)**

* 권고안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제·개정 필요(권고안 반영시 인센티브 지원 계획)

구분	기존 권고안 (환경부, '11.10.14)	금번 권고안 (환경부, '15.3.31)		비고
한·육우	100m	400마리 미만	50m	※ 동 권고안은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 ※ 약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약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축사 신축 및 증·개축시 거리제한 완화
		400마리 이상	70m	
젖소	250m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	500m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500m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바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 (대책)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선)법 시행일로부터 3년('15.3.25~'18.3.24)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가능(가축분뇨법 부칙 제2516호)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를 제출하여 증명 필요

사 대책외 제도개선

□ (위탁사육 금지)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 농해수위 황주홍의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5.1.23)

⇒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 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 (방역시설 건폐율) 정부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 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14.11.13. FTA 여야정 합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규정 ('14.11.13. FTA 여야정 합의사항)

*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4.8.21)

⇒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15.8.11)

*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현 50% → 40% 이내)

□ (축사차양, 지붕연결, 배출시설) 무허가 축사에 처마(비가림시설),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입법예고 9.9~10.19)

⇒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 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가축 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제2장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제1절 인·허가 등 처리절차

<p>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 현지 측량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	
<p>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군 민원실에 제출
↓	
<p>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부과시 납부 *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	
<p>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3일내 처리)
↓	
<p>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 제출
↓	
<p>⑥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 시설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내(신고 5일))
↓	
<p>⑦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 신고(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2절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절차 및 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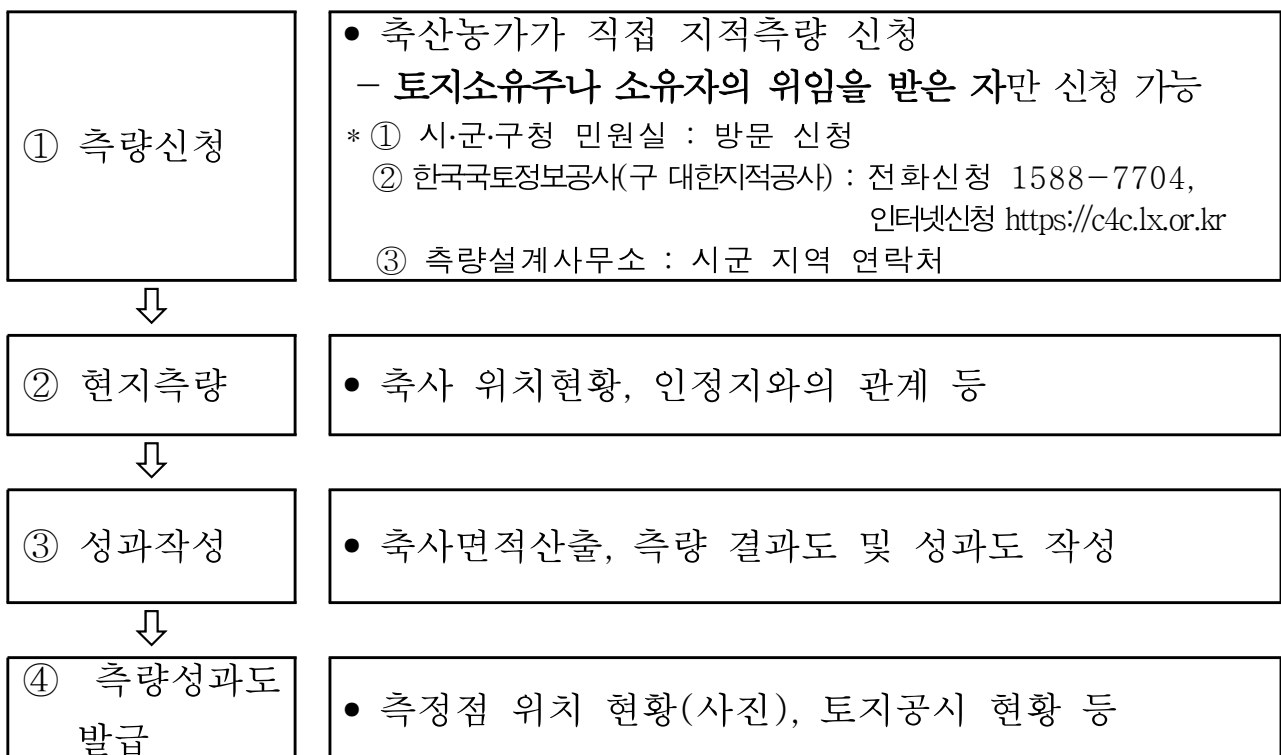
가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측사의 인·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견폐율 확인 등을 위해서는 ‘지적현황측량’ 필요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측사 위치현황 및 인접지와의 관계 등 현지 측량 후, 측사 면적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지적현황 측량 절차

-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발급 → 불법 건축물 자신 신고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예시)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예시)																					
토지소재	세종특별자치시 00면 00리 100 번지 1 필지			축척	1/1200																
측량자	2015년 5월 일	측량성과도 작성자	2015년 5월 일																		
	지적기사 000 (인)		지적기사 000 (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table border="1" style="width: 20%;"> <caption>현황표시</caption> <thead> <tr> <th>범례</th> <th>명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축사(가설)</td> </tr>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body> </table> <div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99 담 101 담 100 담 (→) 102 담</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20%;"> <caption>면적표시</caption> <thead> <tr> <th>지번·부호</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485</td> </tr>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body> </table> </div>						범례	명칭	□	축사(가설)					지번·부호	면적(m ²)	(가)	485				
범례	명칭																				
□	축사(가설)																				
지번·부호	면적(m ²)																				
(가)	485																				
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일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세종특별자치시지사장 [인]																					
비고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소요비용

□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측량 수수료는 측량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의 수량 및 면적에 따라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표】

[2015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기준] (단위 : 원 / 부가세 별도)

개별공시지가 건물면적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1~1,500(m ²)까지	146,000	177,000	208,000	270,000	312,000	333,000
~3,000(m ²)까지	173,000	210,000	247,000	321,000	370,000	395,000
~4,500(m ²)까지	200,000	243,000	286,000	372,000	429,000	458,000
~6,000(m ²)까지	227,000	275,000	324,000	421,000	486,000	518,000
~7,500(m ²)까지	255,000	309,000	364,000	473,000	546,000	582,000

※ (산출 예) 토지 개별공시지가 : 18,100원 / 건물의 수량 : 2개동(면적 1,450m², 2,500m²) 일 경우,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는 208,000원 + 247,000원 = 455,000원(부가세 별도)

제3절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불법 건축물(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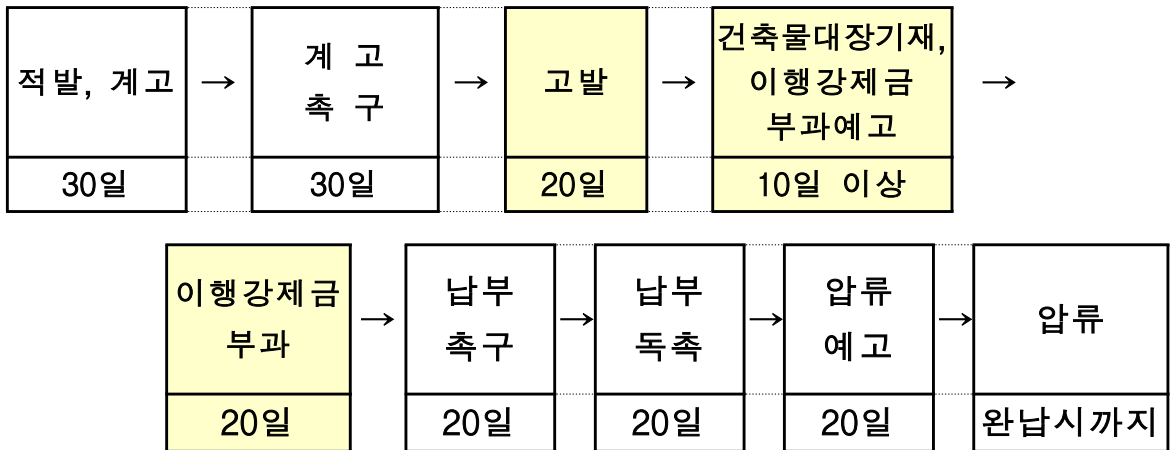
○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하고, 불법건축물 소재 이장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시·군에서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자진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 확인

○ 건축년도(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5년 이내인 위반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불법건축물 처분 체계도 】



* 계고·촉구 기간은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년도가 5년 이내인 불법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형사상 처분 결과에 관계없이 사후허가 검토 가능

*** 건축법 위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공소시효가 5년 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건은 고발의 실효성이 없어 형사 고발 생략

< 붙임 1 >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서

- 건축주 : ○ ○ ○
-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 용 도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 불법행위 면적 : ○,○○○㎡(○개동)

상기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추진허가를 받고자 자진 신고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0. 00.

신청인 : ○ ○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2 >

확 인 서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 불법행위 면적 : ○,○○○m²(○개동)

상기 위치의 불법건축물은 ○○○씨가 ○○○○년도
설립한 건물임을 ○○리 이장으로서 확인합니다.

2015. 00. 00.

확인자 : ○○시·군 ○○면 ○○리 이장

성 명 : ○ ○ ○ (인)

○○시장·군수 귀하

제4절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 시·군(건축·재무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반규모 및 건축년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 통보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기준(분할납부 가능여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15.8.11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개정 준비중)에 따라 부과

* (건축법 제80조제1항)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건축법 제80조의2)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 이하의 경우 1/5 감경, 그 외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 제외)에는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 하고(10일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한 경우 다른 법령의 적법여부를 확인 후 사후 허가

행위자	○○○								비고	
행위구분	불법증축									
물건지 위치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시가표준액(원/㎡)										
구분	용도	공시 지가 금액(원)	건축 년도	과표 금액 (원/㎡)	건축법 제80조	위반 면적 (㎡)	완화기준		이행 강제금 산정금액 (원)	이행 강제금 산정금액 합계(원)
							건축법 위반 행위	정상 참작 (%)		
철파이프조	축사	73,800	1997	3,000	50/100	1,692.63	건축법 제11조	0	2,538,945	2,726,121
경량철골조	관리사	73,800	1997	22,000	50/100	47.58	건축법 제11조	20	104,676	
철파이프조	창고	73,800	1997	3,000	50/100	55.00	건축법 제11조	0	82,500	
						1,795.21			2,726,121	
○ 이행강제금 부과액(원) : 2,726,000										
※ 건물시가표준액산정기준										
작성자	직 : 지방○○		성명 : ○ ○ ○ (인)							

제5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 (제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과 (11호) 가축양육실

- ◇ 가설건축물이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이므로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축사의 분뇨유출 방지턱) 시공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 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사무소 설계 또는 자가 설계도 가능
-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불필요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 * 시·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주고 농장주는 7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신청

○ 업무절차 : ①축조 신고 → ②담당자 검토 → ③신고처리 → ④통보

- ① 건축주(농장주) 신고 → 세움터 또는 수기작성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 ② 담당자 검토 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발생시 건축주(농장주)에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토(입야, 전, 답 인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 ③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건축주 및 협의부서 통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	------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m ²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m ²	연면적 합계	m ²
존치기간	년	월	일 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행랑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용도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용도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간이작업장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임시승인일	사용승인일
착공일	

대지위치	지역
	지구
	구역

전체 개요	건축면적	m ²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m ²	토지소유자
	존치기간		연장기간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별 규모

동별	도로명주소	용도	구조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그 밖의 사항

일자	내용 및 원인	일자	내용 및 원인

제6절 건축 신고 또는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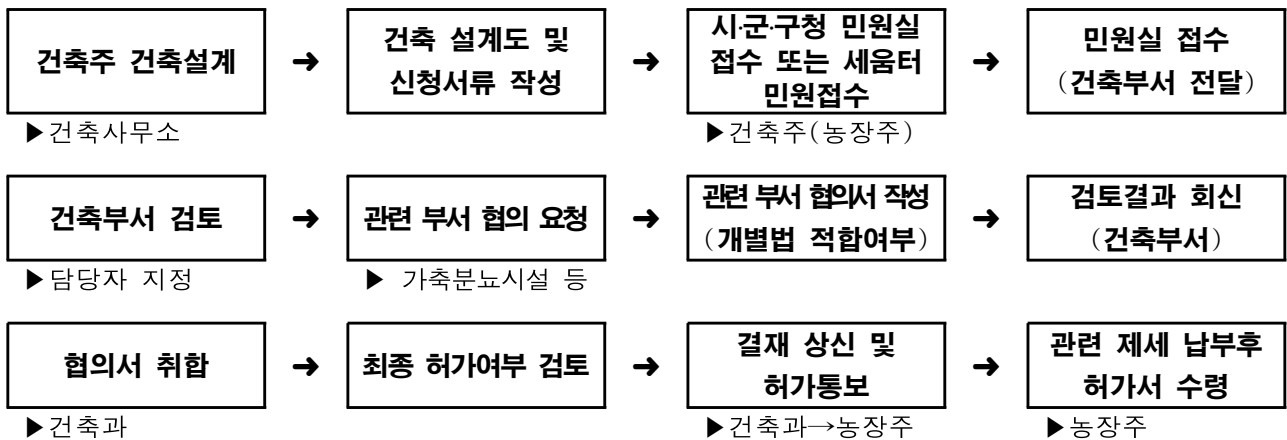
□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건축허가(신고)는 신청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첨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불필요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신고는 6일)에 처리되며,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관리

< 건축허가(신고) 흐름도 >



< 건축 관련 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필요시, 건폐율 적용
-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허가(복구의무면제) 등 신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착공~준공까지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 토공사(土工事) 및 정지공사(整地工事) 축사 연면적 1,000㎡ 이상시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 ◆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허가만 해당)
- ◆ 오염총량제 관련 :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
- ◆ 환경영향평가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관리지역의 경우)
-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 가축사육시설의 소독설비

가 건축 신고

□ 건축물 동별 면적이 400㎡ 이하일 경우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건축신고는 신청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첨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불필요

□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에 처리되며,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관리

○ 업무절차 : ①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②담당자 검토 → ③신고처리 → ④통보

① 건축주 → 세움터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② 담당자 검토 후 협의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협의부서 선정(지목이 전·답인 경우 개발행위, 임야인 경우 산지 전용 협의)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③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처리, 통보

- 협의부서 조건을 포함한 건축신고서를 건축주에 교부

- 협의부서에 건축신고 처리여부 통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신고사항변경신고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	---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Ⅳ)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전체 개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 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 ²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m 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m ²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일괄처리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공작물 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input type="checkbox"/>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input type="checkbox"/> 사도개설허가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input type="checkbox"/> 하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배수설비 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공급신청 <input type="checkbox"/>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원구역 행위허가 <input type="checkbox"/> 도시공원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도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에 한정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마. 농업이나 수산업에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건축법」 제16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법」 제80조·제111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²	
건축물명	주용도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용적률 %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나 건축 허가

□ 건축물 동별 면적이 400㎡ 이상일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건축허가는 신청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첨부*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미필요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며,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관리

○ 업무절차 : ①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고 → ②담당자 검토 → ③신고처리 → ④통보

① 건축주 → 세움터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② 담당자 검토 후 협의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건축주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협의부서 선정(지목이 전·답인 경우 개발행위, 임야인 경우 산지 전용 협의)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③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처리

- 협의부서 조건을 포함한 건축허가서를 건축주에 교부

- 협의부서에 건축허가 처리여부 통보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건축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재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허가사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건축
------	--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_____)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_____ 건축주 (서명 또는 인) _____ @ _____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_____)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대지면적 m²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²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_____ 동 _____ 부속건축물 _____ 동 _____ m²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_____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_____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m²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주차장	자주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대	
	기계식	대 m ²	대 m ²	대 m ²		
일괄처리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공작물 축조신고 <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허가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input type="checkbox"/>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input type="checkbox"/> 사도개설허가 <input type="checkbox"/> 도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input type="checkbox"/> 하천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배수설비 설치신고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공급신청 <input type="checkbox"/>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input type="checkbox"/> 공원구역 행위허가 <input type="checkbox"/> 도시공원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준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 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일 ~ 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건축법」 제19조 제1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80조, 제108조,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²	
건축물명	주용도
건축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m ²)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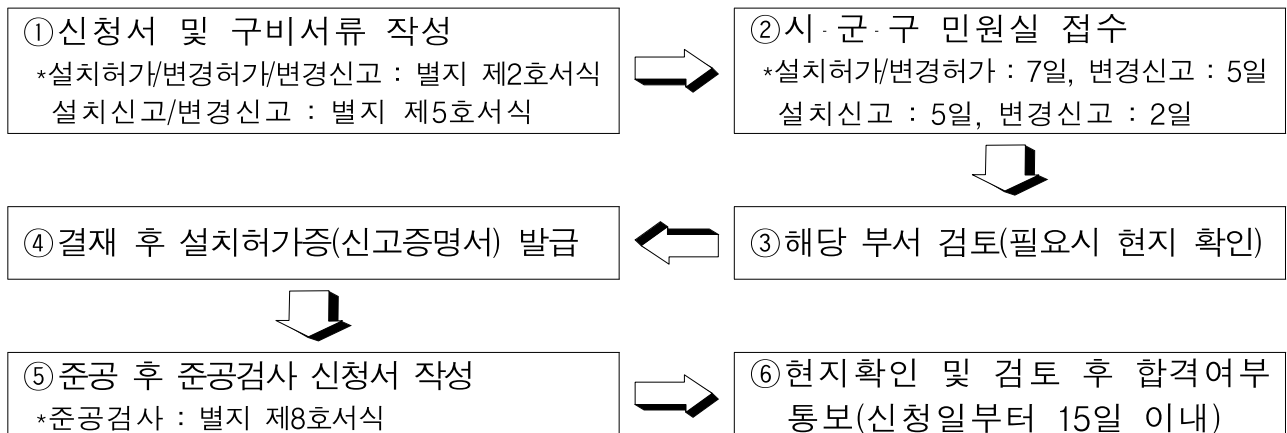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7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 및 허가 신청 후, 준공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건축 관련 인허가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건축 서류 검토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시 별도 신청 가능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적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신고는 5일)에 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는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한 자는 비료생산업(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 또는 비료생산업(변경)등록증 제출시 준공검사로 갈음 가능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교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등 흐름도 >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허가대상 배출시설 적용대상(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1)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가축분뇨법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한 경우
-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 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허가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가축분뇨법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하는 경우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설치허가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	------	-------------------------------------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착공 예정일		⑧ 준공 예정일							
	⑨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m ²)	수량	배출량(m ³ /일)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m ³ /일)	수량			
⑩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m ²)					
⑪ 사용 용수량(m ³ /일)			⑫ 퇴비저장시설(m ³)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m ³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 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 신고번 호	소재지
⑭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	---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 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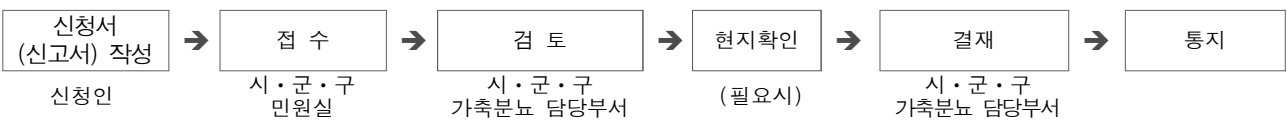
유의 사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 사. 사용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성 방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 바. 최종오니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 가. ⑨, ⑬의 축종은 돼지, 소, 젓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 나. ⑨,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 다. ⑬의 종류는 분, 오,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 마릿수	규모(m ²)	수량	배출량(m ³ /일)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m ³)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m ²)	
사용 용수량(m ³ /일)			퇴비저장시설(m ³)			
위탁 처리 내용	배출내역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축종	종류	업체명	처리 업체명	소재지	처리방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60%;"> <p>허가조건</p> </div> <div style="width: 35%; text-align: right;"> <p>년 월 일</p> </div> </div>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p>						
<p>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p>직인</p>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 신고대상 배출시설 적용대상(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2)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젓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 시행규칙 제7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 설치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	------	------	------------------------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m ²)	수량	배출량(m ³ /일)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m ³ /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m ²)				
	사용 용수량(m ³ /일)					퇴비저장시설(m ³)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m ³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 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 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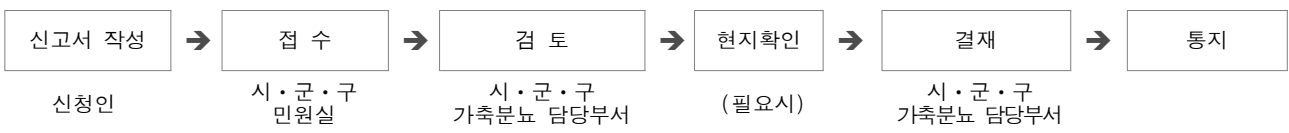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신고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m ²)	수량	배출량(m ³ /일)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m ³)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m ²)	
사용 용수량(m ³ /일)				퇴비저장시설(m ³)		
위탁 처리 내용	배출내역		수집/운반 내역	처리내역		
	축종	종류	업체명	처리업체명	소재지	처리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다 기 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가축분뇨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제4호)

-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m³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육계 또는 오리 사육자가 아래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음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자(가축분뇨법 제16조)

- 「가축분뇨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자
- *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자가설계 가능) 처리(퇴·액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는 예외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허가	또는 [] 신고 제 호
시설용량 (㎡/일)			
시 공 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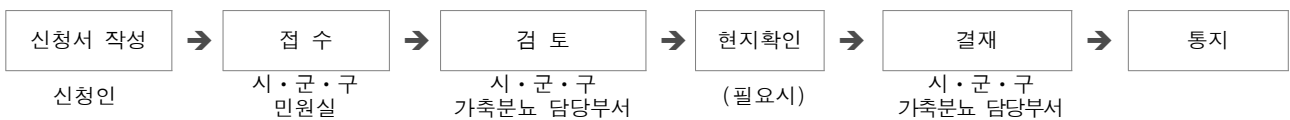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제8절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함

○ 건축 신고(허가)·변경 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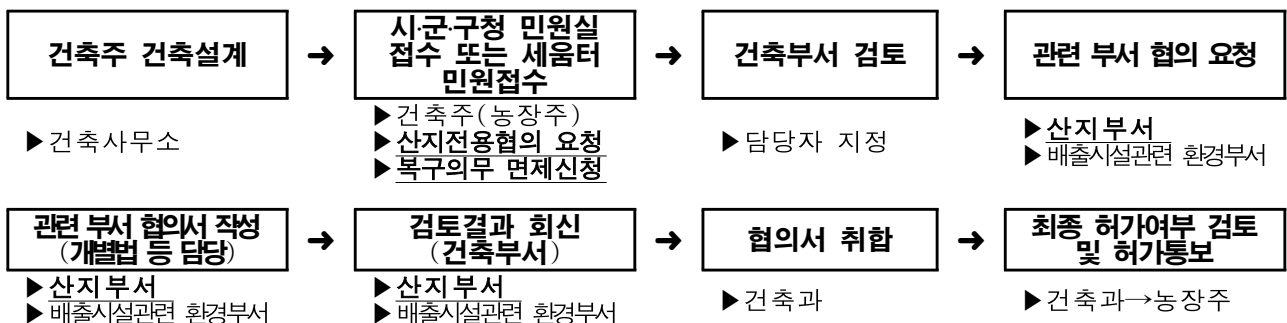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① 사업계획서, ② 산지전용타당성조사(30만㎡이상) 결과서,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지형도(1/25천 이상), ⑤ 산지의 실측도(축적 1/1,200 ~ 1/6,000), ⑥ 산림조사서, ⑦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⑧ 표고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 ⑨ 농업인 증명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의 실측도,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서류), ③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법처리(7년이내 불법 전용-공소시효 7년) 가능하며 불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복구명령도 가능,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5년이내 불법건축물 사법처리-공소시효 5년)을 납부해야하며, 사육시설 증가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변경, 축산업 허가 변경 등 필요

〈 임야(산지) 복구의무 면제 신청 흐름도 〉



산지전용(허가·신고) [] 협의 [] 변경협의 요청서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협의 구분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협의요청기관의 장	
산지전용 목적	
근거 법령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p>첨부서류</p>	<p>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p> <p>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p> <p>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p> <p>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p> <p>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p> <p>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p> <p>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p> <p>1)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p> <p>2)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p> <p>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p> <p>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거양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p> <p>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p> <p>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자목의 서류</p> <p>3. 산지전용 변경협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수수료</p>	<p>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p> <p>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p> <p>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p> <p>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p> <p>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p> <p>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p> <p>3. 산지전용 변경협의: 없음</p>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첨부서류는 제외합니다.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재지		산지면적	m ²
최초 산지전용면적	m ²	산지전용 목적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기간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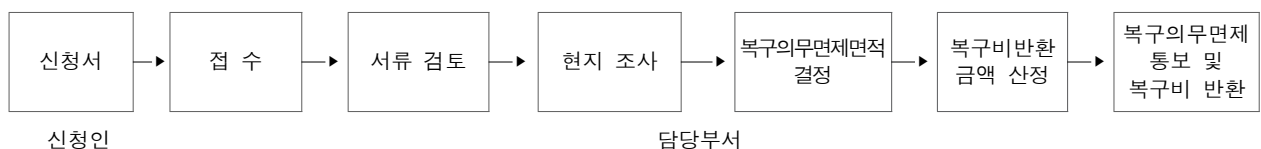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첨부서류	<p>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p> <p>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 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p>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제9절 방역소독설비 확인 및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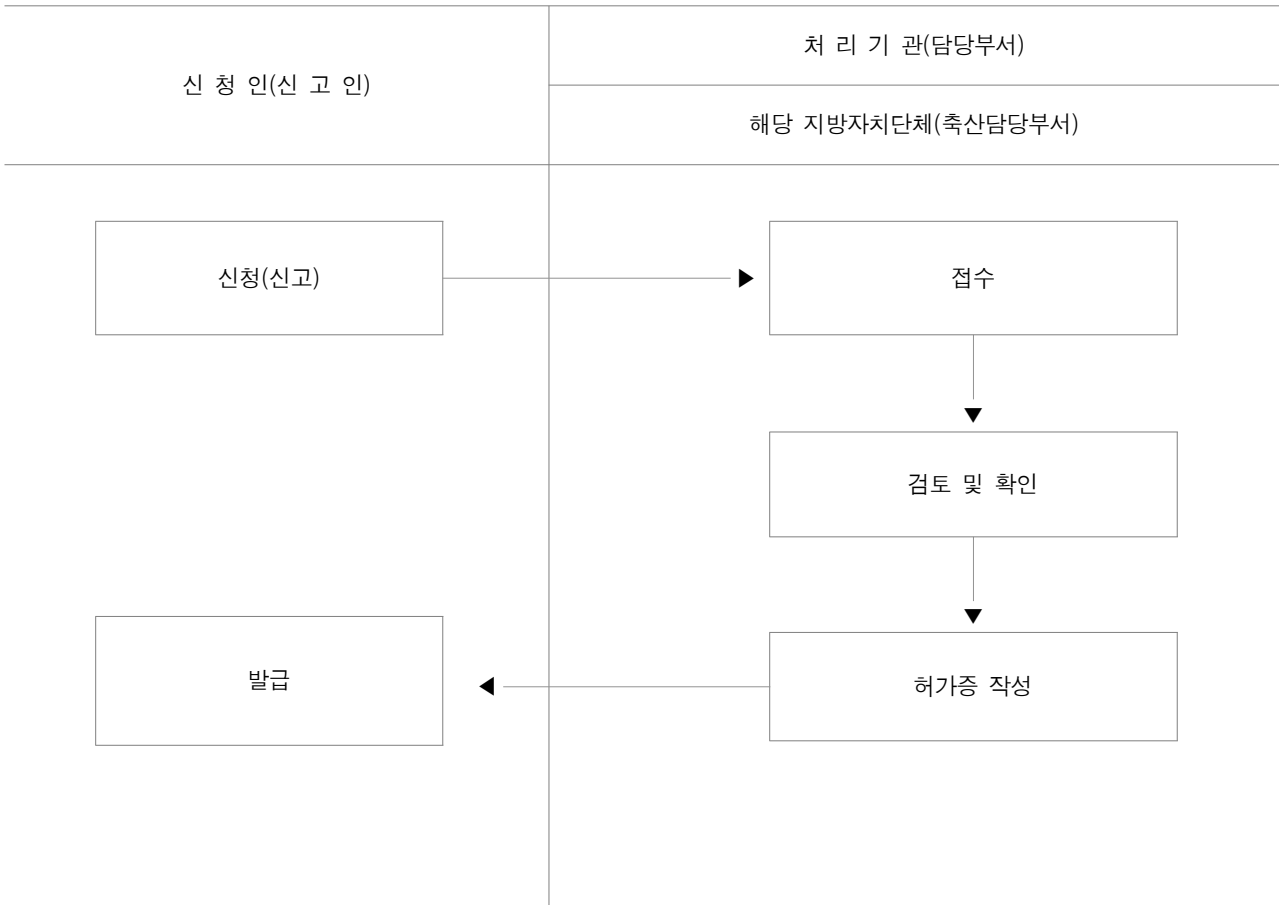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 * (다목)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카목)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독시설이 가설건축물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일 경우 일반건축물 등재후 건축면적 제외 조치
- 절차 : 건축 신고·허가 변경신고시 해당 건축물에 소독설비가 포함될 경우 건축부서에서 축산부서(방역담당)에 협의요청하고 축산부서에서 소독설비에 대한 현장확인후 협의서 작성 회신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건축과 축산 부서간 협의하여 건축부서 출장시 동행 또는 축산부서 별도 현장확인
- 무허가축사 개선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될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 (제27조의2)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별지 제16호~19호 서식)
(제28조제1항)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별지 제16호~제18호 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사항(등록농가종 축종변경, 사육시설 면적 100분의 20 이상 증가 포함) 변경신고(별지 제29조의4 서식)
- 절차 : 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변경신고 등의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 처음 처리부서(건축 또는 환경부서)에서 축산부서(축산업 허가제 담당)에 공문통보, 축산부서에서는 축산농가에 축산업 허가제 변경신고 안내 및 신고서 접수후 처리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⑩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6.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부화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③ 주 소	④ 고 유 번 호

사업장	⑤ 명 칭 (전화번호: _____)
	⑥ 소 재 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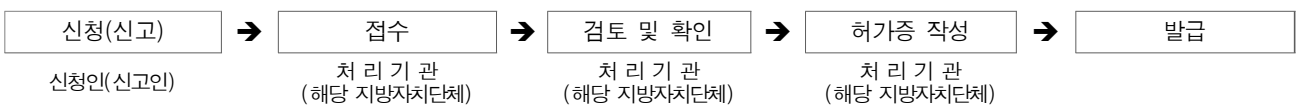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정액등처리업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채취·검사·봉합·동결·인쇄·보관·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사육업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구분	동수(동)	면적(m ²)	⑧ 비고
가축	고정건축물			
사육	가설건축물 등			
시설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m²,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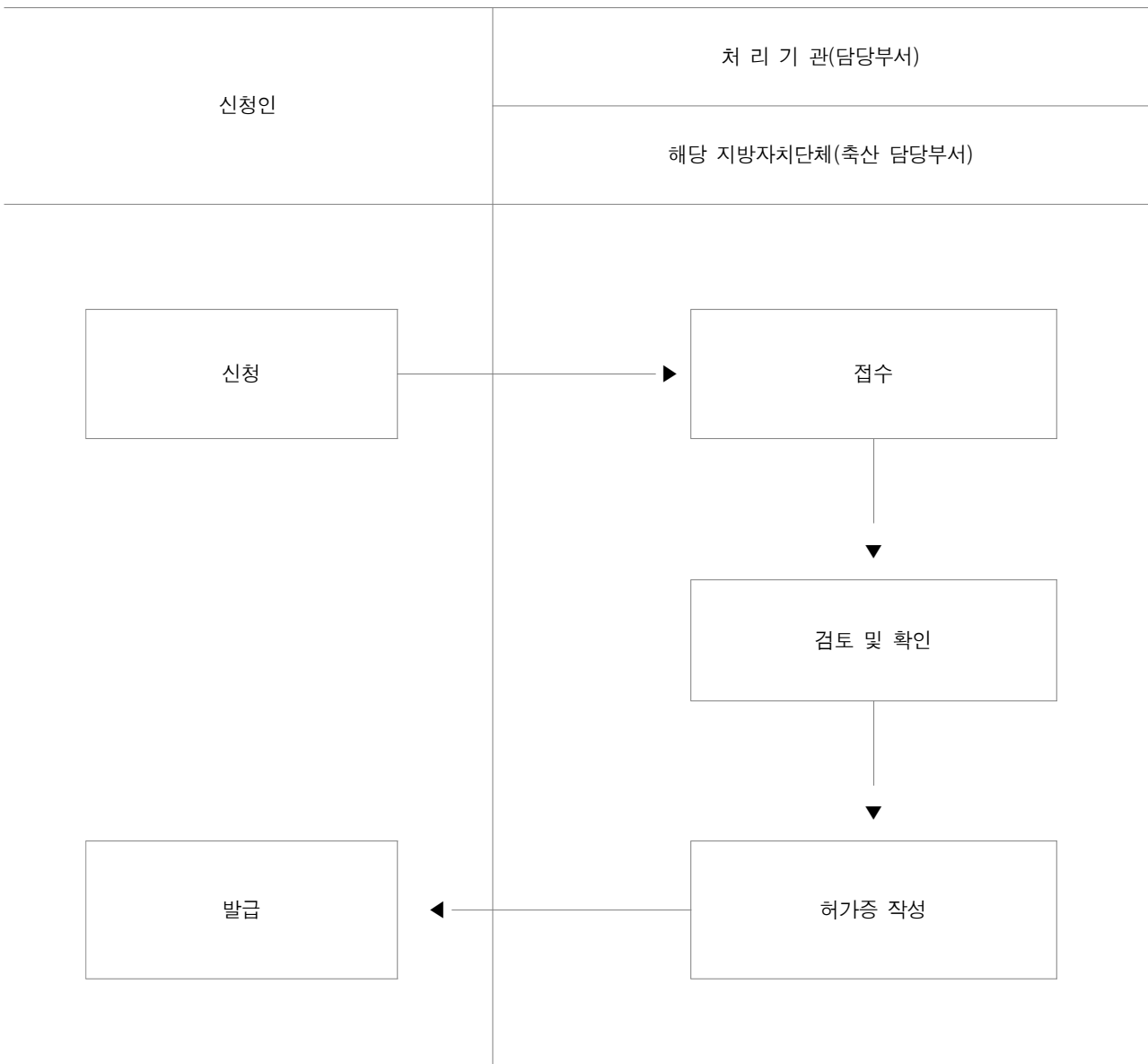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13.4.11>

휴업 폐업 영업재개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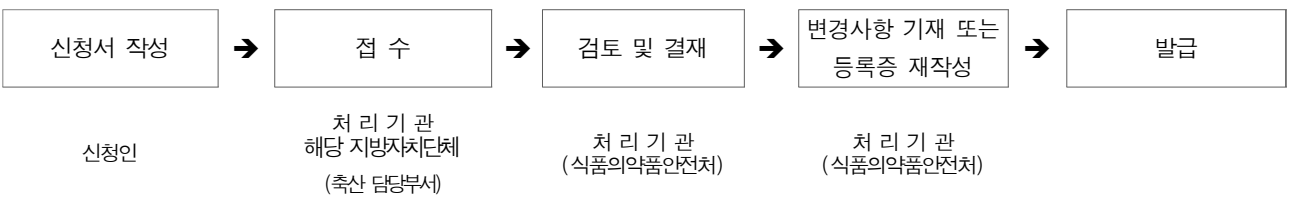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유의사항

-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0절 현장 사례 및 무허가 유형 등

가 화재 후 사육제한으로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

- (당초) 화재 등으로 인해 축사 전체가 멸실된 경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신규설치(재축도 건축법상 신축에 포함됨) 및 허가가 불가하여 축사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
 - 멸실 전 축사는 건축물 허가 및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적법한 축사이나 동일한 장소에 재축된 축사는 무허가 상태
- (개선) 화재 등으로 축사 전체가 멸실된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하여 축사 멸실 이전에 허가된 상태(동일 부지, 동일 규모)로 축사 건축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 가능
 -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가축분뇨법에 따라 설치허가,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은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및 화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유로 동일 부지내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 가능(환경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5.04.03)
 -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다른 부지에 이전에 허가된 배출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건축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해당

나 가금류 비닐하우스 축사

- ① 주민 민원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연장신고) 미 수리
 - (당초)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고서 또는 연장 신고서를 수리해 주지 않아 무허가 축사 발생
 - (개선)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및 관리대장에 등재·관리
- ②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기한을 넘겨 무허가로 전환
 - (당초)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기한 넘겨 무허가축사로 전환, 가축사육제한에 따라 축사 신규 신고 불가
 - (개선) '13.2월 이전의 기존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행강제금 납부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 동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각 농가에 안내, 농가는 7일전까지 연장신청
- ③ 가설건축물의 바닥 방수처리
 - (당초) 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위해 축사의 바닥을 콘크리트 또는 방수처리(방수시트)를 하여야만 축사로 인정, 비용 과다로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로 존치
 -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cm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고, 축사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을 깔고, 육계/오리 출하 시 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축사로 인정, 축사의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

* 시장·군수가 생활악취 또는 가축방역 상 지장이 없다 인정하는 경우 연1회 이상 발생된 분뇨 처리 할 수 있음

다 추가 설치한 대인 소독시설 및 외부 물품 보관창고

-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의무사항으로 설치한 소독창고가 무허가인 사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대인 소독시설, 외부물품 소독창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무허가로 설치
 - 건폐율에 위반되어 무허가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 건물에 이어 붙이는 사례 발생

축사 출입구에 건물을 이어붙인 대인 소독시설 및 외부물품 창고	축사 앞 외부 물품보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	축사를 이어 붙여 방역전실로 이용
		

- (개선) 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등일 경우 소독시설 및 보관 창고는 가설건축물로 신고, 콘크리트 구조물일 경우 소독시설은 건폐율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제3호 카목)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 신고(허가)·변경신고시 축산부서(방역담당, 협조)에서 소독시설 확인

라 가축양육실(자돈 인큐베이터)

- (당초) 돼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폐사율이 높은 이유자돈 구간 사육을 위해 가축양육실(자돈 인큐베이터)을 설치·운영
- 철저한 온·습도 관리 등을 위해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아래 사진처럼 침단시설 설치사례 증가



- (개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축사에 이어붙이거나 콘크리트 구조인 양육실은 건폐율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 건축물로 건축 신고(허가) 추진
- 건폐율이 초과될 경우 가설건축물 등으로 개축하여 적법화
 -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제5항제11호)
 - ※ 가축양육실 : 어미로부터의 압사방지, 온도 유지 등 위하여 소, 돼지의 새끼를 어미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사육하는 시설
- 가축양육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가축분뇨처리 시설 증설 및 배출시설 신고(허가)·변경 등 추진

마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

□ (당초) 퇴비사 바닥과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가축 분뇨처리시설이지만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어 건폐율이 초과되어 무허가 축사 발생

* 분뇨를 적재하거나 교반할 때 벽체가 분뇨의 무게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많은 농가에서 퇴비사 벽을 콘크리트로 시공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퇴비사






□ (개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건폐율)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등 진행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가축분뇨법 제12조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2013년 2월 20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신설, '15.9.9~10.19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 및 변경 등 조치

바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여 통로, 사료급이 등 사육시설이용

- (당초) 축사 2개동 사이를 지붕으로 연결하여 착유우 이동 통로로 사용 또는 축사로 사용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발생

i. 가축 이동통로 사용	ii. 축사 사용	iv. 사료급이 통로 사용
		

- (개선)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를 진행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돌출 차양이 맞붙어 있는 경우에는 6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신설, '15.9.9~10.19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 연결부위를 사료급여, 이동통로 등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로 이용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등 진행
- 가축사육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등록 사항 변경신고 등 진행

사 축사와 축사 연결하여 복도 및 창고 등 사용

- (당초) 축사와 축사 사이를 썬라이트,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연결, 연결부위가 불법 증축되어 무허가 발생
- 축사와 축사 사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붕을 덮어 복도, 창고, 출하대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i. 축사간 복도를 썬라이트로 덮은 경우	ii. 축사간 복도를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 창고로 활용	iii. 출하대 사용
		

- (개선)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를 진행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향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돌출 차양이 맞붙어 있는 경우에는 6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신설, '15.9.9~10.19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iii)의 경우 연결 부위를 출하대로 이용시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가축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필요

아 퇴비사와 퇴비사를 연결하여 관리사, 창고, 축사 등 사용

□ (당초) 퇴비사와 퇴비사 사이 불법 증축하여 무허가 발생

- i) 퇴비사 사이를 연결하여 연결부위와 퇴비사를 관리사 및 창고로 활용, 가축분뇨는 야외에 야적함으로써 환경오염 유발
- ii) 퇴비사 2개 동을 신축(사용승인)후 중간부분을 연결하여 창고로 사용
- iii) 계사, 퇴비사를 각각 건축후 공간을 연결하여 계사로 활용

i. 퇴비사를 관리사로 사용하고 퇴비를 야적	ii. 퇴비사 사용승인 후 연결하여 무단증축된 부분을 창고로 사용	iii. 기존 축사와 신축축사 및 퇴비사를 연결하여 연결부위를 축사로 활용
		

□ (개선)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를 진행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15.9.9~10.19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 i)의 경우 퇴비사 일부를 관리사로 이용하므로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신고(허가) 등이 필요하며, 퇴비 야적으로 가축분뇨법 위반이 되므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지도 필요
- ii)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필증을 확인하여 변경 신고 해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등 필요
- iii)의 경우 연결부위 및 기존 퇴비사 등을 계사로 사용하므로 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 필요

* 분뇨 처리시설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분뇨 전량 위탁처리 필요

자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축사로 활용

- (당초) 허가받은 축사의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사료보관용, 가축사육시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발생

i. 조사료 보관장소로 이용	ii. 축사로 사용	iii. 축사로 이용
		

- (개선)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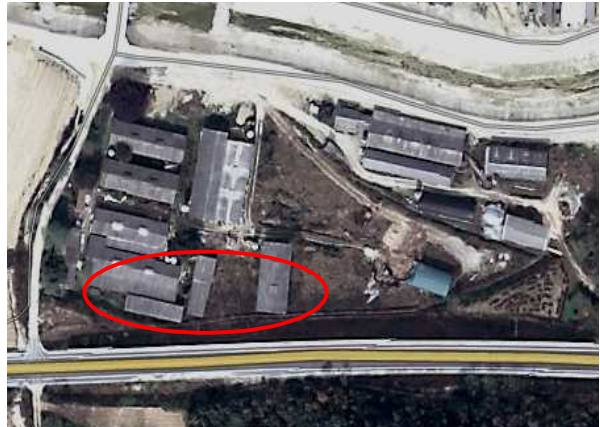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는 3m이하의 범위에서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 제외(기 시행중)

- i) 조사료 보관창고 이용시 처마(차양) 부위는 건축물대장에 통로로 구분되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불필요
- ii ~ iii) 처마(차양) 부위를 가축사육시설로 이용시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증설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가축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필요

마 축사 일부분이 타 법률에 위반된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① 축사 일부가 도로에 인접한 경우

- **(현행)** 기존 허가된 축사가 있으나, 일부 비육사 등을 추가 설치하면서 도로 인접부지에 설치한 경우

일부 무허가 축사 등이 도로와 5M이내 인접	(위성사진으로 본 축사 위치)
	

- **(방법)** 무허가 축사가 인근 도로(국도)에 5M 이내에 인접한, 축사 등을 철거할 경우에만 적법화 가능

② 임야에 퇴비사가 설치된 경우

- (당초) 기본 건축물인 축사는 잡종지에 설치되어 적법하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설치한 퇴비사가 임야에 위치한 경우
- 임야에 위치한 건축물로 인해 전체 축사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적법화 불가

<p>임야에 설치된 퇴비사로써, 지붕이 썬라이트로 설치되어 있음.</p>	<p>위성사진으로 본 퇴비사 위치</p>
	

- (개선) 퇴비사(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건폐율) 제외되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로 가능하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축분뇨법 제12조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2013년 2월 20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신설, '15.9.9~10.19 입법예고, 개정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 임야의 경우 건축 신고(허가)·변경 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 협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적법화 추진 (제8절 참고)

③ 축사 일부가 하천부지에 포함된 경우

□ (현행) 허가된 축사와 축사의 사이를 천막으로 덮어 축사로 이용 중이며, 지정된 하천 부지에 일부 포함



□ (방법) 축사간 연결부위(6미터이하)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므로 일반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로 가능하나 하천부지 관련 해당 법률의 검토후 적법화 추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신설, '15.9.9~10.19 입법예고, 개정 과정중 입법예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개정사항 확인 필요)

○ 하천부지 입지관련 기존 허가된 축사가 하천과 기존 허가된 축사가 하천과 오히려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사실로 유추할 때,

- 축사 설치 후 법률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률의 경과조치 등 확인 필요

제3장 향후 추진계획

□ 축산 농가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15.3월~)

-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워크숍 개최('15.11월~)

- 설명회·워크숍 이후, 지자체별 농가대상 교육·홍보 추진

* 시·군 축산부서에서는 건축·환경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 실시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 실시

□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개정(계속)

- 축사 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기준 등

□ 무허가 축사 개선 현황 모니터링('15.11월~)

- 무허가 축사 개선실적 관리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장애요인 파악

1

총괄

【문 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의 효력은?

- 금번 마련된 정부 합동 “무허가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행정지침 수준의 효력을 지님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실행 계획을 요령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임
- 법률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 1-2】 기존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원상복구 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지?

- 위반건축물 자진 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함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 이행강제금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부과·감경 기준을 정한 경우 지자체별 부과액이 상이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16.2.12일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부과·감경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문 1-3】 가축사육제한 조례 미적용 특례 시행 시기 및 대상은?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부칙 제8조) 적용은 시행일(2015.3.25.)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 * 부칙 제8조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없이 적용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축사 등)에만 특례가 적용됨

< 관련 조문(부칙 제12516호) >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문 1-4】 지자체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완료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허가축사의 동일 부지에 불법 증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 여부?

-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완료된 축사로 불법 증축된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동 특례에 적용됨, 다만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문 1-5】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제1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의 면적산출?

○ 전체 배출시설 면적. 즉,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적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면적의 합계로 산출함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1항) : 돼지(400㎡이상 600㎡미만), 소·젓소·말(400㎡이상 500㎡미만), 닭·오리·메추리(600㎡이상 1,000㎡미만), 양·사슴·개(100㎡이상 200㎡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동 면적의 1/2의 사육시설

< 관련 조문(법 부칙 제12516호) >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6】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과 기한” 은?

○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증축·개축한 배출시설을 말하며,

* 해당 면적은 전체 배출시설 면적이 아닌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임(추가 증가된 면적)

- 규모미만 시설과 기한(‘24.3.24)은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00㎡ 미만)의 돼지·소·젓소·말 사육시설,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그 밖의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60㎡ 미만)의 사육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2항)

【문 1-7】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제26158호) 제3조에 따라 2016.3.25일까지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과 법 부칙 제9조의 특례적용 여부

○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시설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로이 사육동물로 추가되는 염소, 메추리, 사슴(200㎡~500㎡미만)과 배출시설로 새로이 추가되는 운동장, 방목지 등을 말하며, 무허가·미신고 대상시설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

〈 관련 조문(시행령 부칙 제261158호) 〉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 1-8】 '13.2월 이전의 기존 축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에서 정한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음
- 축산업 등록,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 확인서, 축사 임대계약서, 가축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등

【문 1-9】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방법은?

-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 신청 후, 준공검사 이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해야 함
- 가축분뇨법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작성,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준공 이전에 제출하면 됨

【문 1-10】 민원 문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조치 거부, 주민동의서 요구에 따른 대처방안은?

-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신고·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함
 - 주민동의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

【문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가설건축물도 지원되는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시설 구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금 축사의 경우 축사 전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축종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 없음
-

【문 1-12】 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축사 이전시 정부 지원은?

- 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이전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통해 적법화 가능
 -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라도 준공 시 적법화를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을 제외한 축사 개보수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문 1-13】 육계·오리 축사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후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의 처리 방법은?

- 가축분뇨처리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게 제공(위탁처리)가능(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경작농가에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

- 이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탁처리내역에 작성관리 해야함

【문 1-14】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위탁사육의 제한 시기는?

- '15.3.25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에 위탁사육을 할 수 없음

*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 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축사에 위탁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무허가 축사 위탁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탁사육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18.3.24, 한센인촌 '19.3.24) 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진행(국회 법사위 계류중, '15.10.28) 중에 있음('16년 상반기 시행 예정)

【문 1-15】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상담해주는 곳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070-4289-2310)에서 전담 상담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2-1】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바닥, 벽, 지붕, 기둥의 기준은?

- 축사시설 중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제10호 또는 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축조할 수 있음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호)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 바닥에 대한 제한(콘크리트 가능)은 없으며, 벽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 지붕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와 합성강판(1/2이하) 혼용을 허용하고 있음.

※ 지붕은 가설건축물 재질(비닐, 천막, 합성수지)이 아니나, 벽면은 합성수지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음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 가능

※ 기둥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하고, 벽과 지붕을 천막, 비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 혼용)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음

【문 2-2】 가설건축물 재질로 축사(한우사 등) 건축시 분뇨 유실방지턱(벽)을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 해당 유무?

- 가설건축물은 벽이 없어야 하나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분뇨 유실 방지턱’을 설치(50cm내외)는 가능함

【문 2-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안되는 용도지역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전에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시행을 할 수 없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물의 건축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린벨트 지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가능하지 않음

【문 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방법은?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함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및 연장 가능여부를 통보

【문 3-1】 무허가 축사 중 일부는 남기고 적법화 가능한지?

- 모든 무허가 축사는 일괄적으로 적법화 해야 하며 일부만 적법화 하고 나머지는 무허가 축사로 유지할 수 없음

【문 3-2】 농지법 개정 이전에 전용 받지 않고 지어진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지?

- 농지법 개정('07년)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도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07년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축사를 신축 후,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 양성화 시 농지전용은 필요하지 않음

【문 3-3】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법 건축물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 건축 신고 등의 절차 진행 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함

【문 3-4】 축종별 면적에 따른 처리시설 확보 규모는?

-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용량계산은 분뇨발생량, 함수율 등에 따라 산출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함
- 축종별 용량 계산식, 통풍식 톱밥발효 시설 용량 계산식,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 계산식 등은 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마련('09)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 3-5】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가축 분뇨법상 벌칙도 유예되는 건지?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변경 포함)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법 개정을 통한 행정처분의 유예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벌칙 처분을 유예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문 3-6】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허가면적 확대, 수질보전대책지역 규제 완화, 목장용지와 전답 통합, 국공유지 불하, 임야 훼손 소급 방안 등은?

-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월)”에 포함되지 않은 그린 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등은 별도 마련해야 함
 -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부처간 합의된 개선대책의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법률 개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2

전국 시·군·구 민원실 현황

기관명		민원실명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서울		열린민원실	서울 세종대로 110	02-2133-7900
부산		민원봉사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	051-888-2878
	중구	통합민원창구	부산 중구 대청동1가 1	051-600-4261
	서구	민원봉사과	부산 서구 토성동4가 2-3	051-240-4267
	동구	동구 민원실	부산 동구 구청로 1	051-440-4262
	영도구	통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051-419-4262
	부산진구	민원여권과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051-808-5351
	동래구	민원여권과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	051-550-4262
	남구	통합민원실	부산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051-607-4262
	북구	민원봉사과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051-309-4266
	해운대구	통합증명발급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051-749-5672
	사하구	민원여권과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051-207-6041
	금정구	민원봉사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051-514-5501
	강서구	종합민원실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00번지	051-970-4000
	연제구	민원여권과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051-665-4262
	수영구	통합민원실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051-610-4774
	사상구	종합민원실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051-310-4264
	기장군	민원봉사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051-709-4262
대구		종합민원실	대구 중구 공평로 88	053-803-2891
	중구	종합민원실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	053-661-2312
	동구	민원봉사과	대구 동구 아양로 207	053-662-2311
	서구	종합민원실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053-663-2000
	남구	종합민원실	대구 남구 이천로 51	053-664-2311
	북구	종합민원실	대구 북구 옥산로 65	053-665-2000
	수성구	종합민원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053-666-2311
	달서구	종합민원실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053-667-2311
	달성군	종합민원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13	053-668-2000

인천		종합민원실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032-120
	중구	종합민원실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032-760-7114
	동구	종합민원실	인천 동구 금곡로67(송림동)	032-770-6330
	남구	종합민원실	인천 남구 독정리로 95	032-120
	연수구	종합민원실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7114
	남동구	종합민원실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032-453-2430
	부평구	종합민원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032-509-6310
	계양구	종합민원실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450-5284
	서구	종합민원실	인천 서구서 꽃로 307	032-560-4250
	강화군	통합민원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032-930-3242
	옹진군	종합민원실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0	032-899-2162
광주		일반민원실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062-613-2965
	동구	통합민원실	광주 동구 서남로 1 (서석동)	062-608-3161
	서구	민원봉사과	광주 서구 경열로 33	062-360-7770
	남구	종합민원실	광주 남구 봉선로 1(주월동)	062-607-3211
	북구	민원봉사과	광주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062-410-6260
	광산구	민원봉사과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062-960-8211
대전		시민봉사과	대전 서구 둔산로 100	042-120
	동구	종합민원실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042-251-4114
	중구	민원봉사실	대전 중구 중앙로 100	042-606-6373
	서구	민원봉사과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042-611-6672
	유성구	구민봉사실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042-611-2297
	대덕구	민원지적팀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042-608-6703
세종		세종민원실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3	044-300-3114
경기		언제나민원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031-120
		장안구청 민원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1899-3300
		권선구청 민원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2	1899-3300
		팔달구청 민원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1899-3300
		영통구청 민원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1899-3300
	성남시	종합민원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2372
	고양시	종합민원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909-9000
	부천시	민원봉사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032-320-3000

용인시	종합민원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577-1122
안산시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81-2130
안양시	시민봉사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35	031-8045-2137
남양주시	시청민원실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031-590-2136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	031-828-2643
평택시	종합민원실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5550
시흥시	민원지적과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031-310-2158
화성시	민원봉사과	경기 화성시 시청로 159	031-369-2602
광명시	종합민원실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1688-3399
파주시	민원봉사실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031-940-4181
군포시	민원실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031-390-0136
광주시	종합민원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031-760-2802
김포시	시민봉사과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1	031-980-2711
이천시	종합민원실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	031-644-2132
구리시	종합민원실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031-557-1010
양주시	민원봉사과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31 1
안성시	여권민원창구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	031-678-3284
포천시	민원과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031-538-2131
오산시	민원봉사실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41	031-8036-7270
하남시	종합민원실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6131
의왕시	종합민원실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	031-345-2311
여주시	민원봉사과	경기 여주시 세종로 1	031-887-2131
동두천시	민원실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031-860-2135
양평군	고객지원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031-770-2037
과천시	민원봉사과	경기 과천시 관문로 69	02-3677-2487
가평군	종합민원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031-580-2114
연천군	종합민원과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031-839-2131
강원	민원봉사실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284
춘천시	통합민원실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033-250-3282
원주시	민원과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033-737-2472
강릉시	종합민원실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33	033-640-5090
동해시	고객만족센터	강원 동해시 천곡로 77	033-530-2131

	태백시	제1·2민원실	강원 태백시 태백로 21	033-550-2051
	속초시	종합민원실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033-639-2723
	삼척시	종합민원실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033-570-3266
	홍천군	허가민원과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033-430-2263
	횡성군	민원봉사과	강원 횡성읍 태기로 15	033-340-2489
	영월군	민원봉사과	강원 영월군 하송로 64	033-370-2243
	평창군	종합민원실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033-330-2000
	정선군	종합민원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033-560-2243
	철원군	제1,2민원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033-450-5243
	화천군	민원봉사과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033-441-1211
	양구군	종합민원실	강원양구군 관공서로 38	033-480-2200
	인제군	민원봉사과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033-460-2031
	고성군	종합민원실	강원 고성군 고성중앙길 9	033-680-3252
	양양군	민원실명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033-670-2114
충북		민원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2731
	청주시	민원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043-200-2206
	충주시	종합민원실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043-850-5482
	제천시	민원지적과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043-641-4923
	청원군	민원과	충북 청주시 상당로 69번길 38	043-251-3593
	보은군	민원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043-540-3051
	옥천군	민원실	충청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043-730-3114
	영동군	민원과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043-740-3114
	증평군	민원과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043-835-3411
	진천군	종합민원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081
	괴산군	괴산군 민원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0	043-830-3480
	음성군	종합민원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043-871-3231
	단양군	민원봉사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043-420-2452
충남		민원봉사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2316
	천안시	자치민원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156	041-521-2243
	공주시	종합민원실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1899-0088
	보령시	고객만족실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041-930-3241
	아산시	민원봉사과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1577-6611

	서산시	통합민원실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1	041-660-2243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041-746-5565
	계룡시	시민봉사실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042-840-2351
	당진시	민원실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041-350-3114
	금산군	종합민원실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041-750-2280
	부여군	민원봉사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041-830-2073
	서천군	열린민원실	충남 서천읍 군청로 57	041-950-4247
	청양군	민원봉사실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041-940-2141
	홍성군	종합민원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041-630-1244
	예산군	민원봉사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33	041-339-7152
	태안군	민원봉사과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041-670-2053
전북	전주시	민원봉사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2256
	군산시	민원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281-2263
	익산시	민원봉사과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063-454-2533
	정읍시	종합민원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063-859-5350
	남원시	종합민원실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5343
	김제시	민원봉사실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063-620-6107
	완주군	종합민원실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063-540-3243
	진안군	종합민원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063-290-2946
	무주군	민원봉사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063-430-2247
	장수군	종합민원실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063-320-2242
	임실군	민원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63-350-2247
	순창군	민원봉사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063-640-2252
	고창군	민원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063-650-1410
	부안군	민원봉사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063-560-2372
	부안군	종합민원실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380
전남	목포시	종합민원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2000
	여수시	민원봉사실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061-270-3498
	순천시	종합민원실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061-659-3313
	나주시	종합민원실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061-749-3243
	광양시	종합민원과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061-339-8200
	광양시	통합민원실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061-797-2248

	담양군	민원봉사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061-380-3231
	곡성군	민원봉사과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50	061-360-8261
	구례군	민원봉사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061-780-2363
	고흥군	종합민원실	전남 고흥군 고흥읍 홍양길 40	061-830-5114
	보성군	민원봉사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4	061-850-5254
	화순군	종합민원과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061-379-3460
	장흥군	민원처리과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061-860-0230
	강진군	통합민원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061-430-3422
	해남군	종합민원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061-530-5200
	영암군	종합민원과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061-470-2248
	무안군	종합민원실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412
	함평군	민원봉사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061-320-0011
	영광군	종합민원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061-350-5246
	장성군	민원봉사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061-390-7200
	완도군	민원봉사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061-550-5351
	진도군	민원봉사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061-540-3602
	신안군	종합민원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061-240-8272
경북		민원봉사실	대구 북구 연암로 40	053-950-2000
	포항시	민원실	경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054)270-8282
	경주시	민원봉사실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672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054-420-6228
	안동시	종합민원실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6141
	구미시	민원봉사실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054-480-5631
	영주시	종합민원봉사실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054-639-6543
	영천시	민원과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054-330-6721
	상주시	종합민원실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054-537-6141
	문경시	종합민원과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054-550-6141
	경산시	종합민원과	경산시 남매로 159번지	053-810-5671
	군위군	민원봉사과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054-380-6142
	의성군	민원과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054-830-6425
	청송군	민원봉사과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51	054-870-6142
	영양군	민원봉사과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8	054-680-6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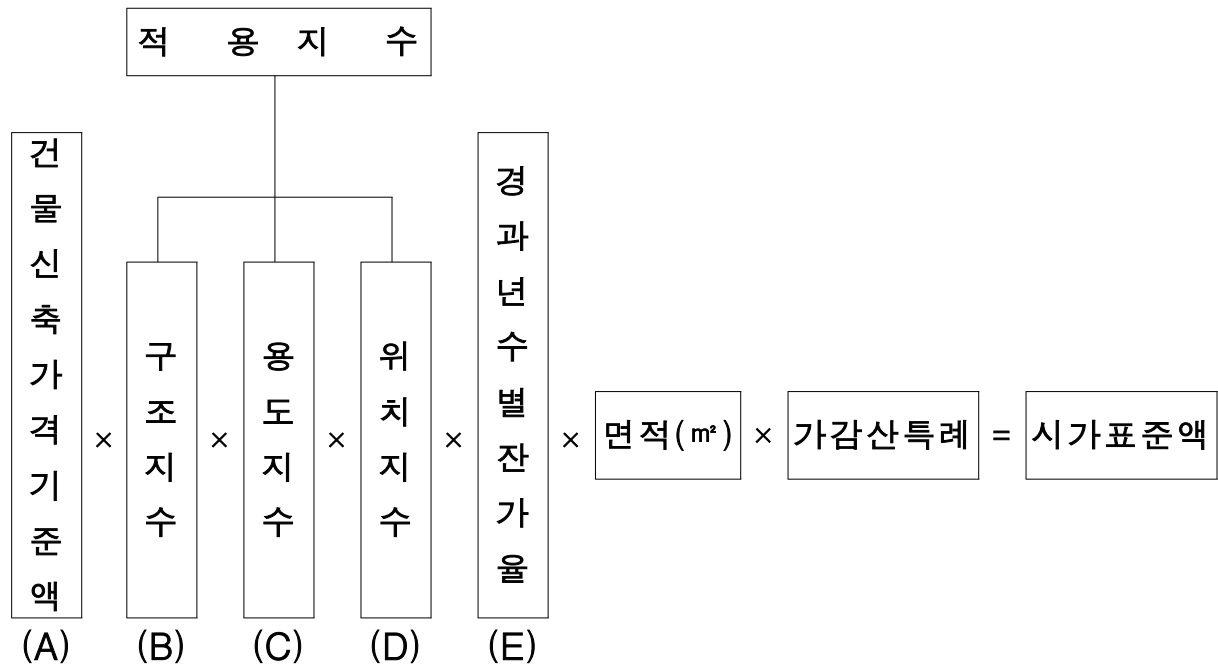
	영덕군	종합민원처리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054-730-6142
	청도군	민원실	경북 청도군 청화로 70	054-370-6142
	고령군	민원과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	054-954-3001
	성주군	민원봉사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054-930-6083
	칠곡군	민원봉사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054-979-6142
	예천군	종합민원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054-650-6147
	봉화군	종합민원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054-679-6171
	울진군	민원실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054-789-6631
	울릉군	민원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054-790-2191
경남	창원시	종합민원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300	055-211-6120
	진주시	민원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055-225-2761
	통영시	종합민원실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번지	055-749-2101
	사천시	종합민원실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055-650-4810
	김해시	민원동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055-831-2810
	밀양시	고객봉사실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055-330-3681
	거제시	통합제증명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055-359-5203
	양산시	민원실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055-639-3551
	의령군	민원봉사실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055-392-2426
	함안군	대민봉사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055-570-2152
	창녕군	종합민원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055-580-2232
	고성군	창녕군민원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055-530-1321
	남해군	종합민원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055-670-2157
	하동군	종합민원실	경남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055-860-3002
	산청군	민원실	경남 하동읍 군청로 23	055-880-2076
	함양군	민원과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055-970-6302
	거창군	민원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055-960-5131
	합천군	민원봉사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055-940-3296
	합천군	종합민원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055-930-3192
제주	제주시	민원실	제주시 문연로 6(연동)	064-710-12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064-728-210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064-760-2102

참고3

건물시가 표준액 일람표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체계

○ 산출체계도



○ 산출요령

-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m²당 금액 산출
- 산출한 m²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 다만, 1m²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산정
-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
-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m²)}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 산정

* '1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650,000원/m²(변경고시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금액)

□ 적용지수

○ 구조지수의 적용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u>127</u>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3	목구조	<u>107</u>
4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	100
5	연와조	<u>96</u>
6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90
7	ALC조	<u>87</u>
<u>8</u>	<u>시멘트벽돌조</u>	<u>86</u>
<u>9</u>	목조	70
<u>10</u>	시멘트블록조	60
<u>11</u>	경량철골조, 와이어패널조	<u>55</u>
<u>12</u>	조립식패널조, <u>FRP 패널조</u>	50
<u>13</u>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u>14</u>	컨테이너건물	30
<u>15</u>	철파이프조	20

○ 적용요령

-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
-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인 경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하고,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지수 70을 적용. 단,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는 지수 83을 적용
- 콘셱트건물, 패널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
-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

□ 동식물 관련 시설 시가표준액 열람표

① 개별공시지가 1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 조 번 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198	187	166	156	156	149	140	135	134	109	93	85	85	78	62	46	31
2014	194	184	163	152	151	145	136	131	130	105	89	83	81	74	56	42	28
2013	191	181	160	149	146	140	131	127	126	102	85	80	78	70	51	38	25
2012	188	178	156	146	141	136	127	123	122	99	80	78	74	67	45	34	22
2011	185	175	153	143	137	131	123	119	118	96	76	75	70	63	39	29	19
2010	182	172	150	140	132	127	119	115	114	92	72	72	66	60	34	25	17
2009	179	169	146	137	127	122	115	111	110	89	68	70	62	56	28	21	14
2008	175	166	143	134	123	118	110	107	105	86	64	67	58	53	23	17	11
2007	172	163	140	131	118	113	106	103	101	82	59	65	54	49	17	13	8
2006	169	160	136	127	113	109	102	99	97	79	55	62	51	46	11	8	5
2005	166	157	133	124	109	104	98	95	93	76	51	60	47	42	6	4	3
2004	163	154	130	121	104	100	94	90	89	73	47	57	43	39			
2003	160	151	126	118	99	95	89	86	85	69	43	54	39	35			
2002	156	148	123	115	95	91	85	82	81	66	38	52	35	32			
2001	153	145	120	112	90	86	81	78	77	63	34	49	31	28			
2000	150	142	116	109	85	82	77	74	73	60	30	47	27	25			
1999	147	139	113	106	81	77	73	70	69	56	26	44	24	21			
1998	144	136	110	102	76	73	68	66	65	53	21	42	20	18			
1997	141	133	106	99	71	68	64	62	61	50	17	39	16	14			
1996	137	130	103	96	67	64	60	58	57	46	13	36	12	11			
1995	134	127	100	93	62	59	56	54	53	43	9	34	8	7			
1994	131	124	96	90	57	55	51	50	49	40		31					
1993	128	121	93	87	53	50	47	46	45	37		29					

1992	125	118	90	84	48	46	43	42	41	33		26					
1991	122	115	86	81	43	41	39	38	37	30		24					
1990	118	112	83	78	39	37	35	33	33	27		21					
1989	115	109	80	74	34	32	30	29	29	24		18					
1988	112	106	76	71	29	28	26	25	25	20		16					
1987	109	103	73	68	24	23	22	21	21	17		13					
1986	106	100	70	65	20	19	18	17	17	14		11					
1985	103	97	66	62	15	14	14	13	13	10		8					
1984	99	94	63	59													
1983	96	91	60	56													
1982	93	88	56	53													
1981	90	85	53	49													
1980	87	82	50	46													
1979	84	79	46	43													
1978	80	76	43	40													
1977	77	73	40	37													
1976	74	70	36	34													
1975	71	67	33	31													
1974	68	64															
1973	64	61															
1972	61	58															
1971	58	55															
1970	55	52															
1969	52	49															
1968	49	46															
1967	45	43															
1966	42	40															
50 이상	39	37															

② 개별공시지가 10,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 조 번 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203	191	171	159	159	153	143	139	137	111	95	87	87	79	63	47	31
2014	199	188	167	156	155	148	139	134	133	108	91	85	83	76	58	43	29
2013	196	185	164	153	150	144	135	130	129	105	87	82	80	72	52	39	26
2012	193	182	160	150	145	139	130	126	125	101	82	80	76	69	46	35	23
2011	190	179	157	147	140	135	126	122	121	98	78	77	72	65	40	30	20
2010	186	176	153	143	135	130	122	118	116	95	74	74	68	61	35	26	17
2009	183	173	150	140	131	125	118	114	112	91	70	72	64	58	29	22	14
2008	180	170	147	137	126	121	113	109	108	88	65	69	60	54	23	17	11
2007	177	167	143	134	121	116	109	105	104	85	61	66	56	51	17	13	8
2006	173	164	140	131	116	112	105	101	100	81	57	64	52	47	12	9	6
2005	170	161	136	127	111	107	100	97	96	78	52	61	48	43	6	4	3
2004	167	158	133	124	107	102	96	93	92	74	48	58	44	40			
2003	164	155	130	121	102	98	92	89	88	71	44	56	40	36			
2002	160	151	126	118	97	93	87	84	83	68	39	53	36	33			
2001	157	148	123	115	92	89	83	80	79	64	35	51	32	29			
2000	154	145	119	111	87	84	79	76	75	61	31	48	28	25			
1999	151	142	116	108	83	79	74	72	71	58	26	45	24	22			
1998	147	139	112	105	78	75	70	68	67	54	22	43	20	18			
1997	144	136	109	102	73	70	66	63	63	51	18	40	16	15			
1996	141	133	106	99	68	66	61	59	59	48	13	37	12	11			
1995	138	130	102	95	63	61	57	55	55	44	9	35	8	7			
1994	134	127	99	92	59	56	53	51	50	41		32					
1993	131	124	95	89	54	52	48	47	46	38		29					
1992	128	121	92	86	49	47	44	43	42	34		27					
1991	125	118	88	83	44	42	40	38	38	31		24					
1990	121	115	85	79	39	38	35	34	34	27		21					
1989	118	112	82	76	35	33	31	30	30	24		19					

1988	115	108	78	73	30	29	27	26	26	21		16					
1987	112	105	75	70	25	24	23	22	22	17		14					
1986	108	102	71	67	20	19	18	18	17	14		11					
1985	105	99	68	63	15	15	14	13	13	11		8					
1984	102	96	65	60													
1983	99	93	61	57													
1982	95	90	58	54													
1981	92	87	54	51													
1980	89	84	51	47													
1979	86	81	47	44													
1978	82	78	44	41													
1977	79	75	41	38													
1976	76	72	37	35													
1975	73	69	34	31													
1974	69	66															
1973	66	62															
1972	63	59															
1971	60	56															
1970	56	53															
1969	53	50															
1968	50	47															
1967	47	44															
1966	43	41															
50 이상	40	38															

③ 개별공시지가 30,000원 초과 ~ 5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 조 번 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208	196	175	163	163	157	147	142	140	114	98	90	90	81	65	44	32
2014	204	193	171	160	158	152	142	138	136	111	93	87	86	78	59	40	29
2013	201	190	168	157	153	147	138	133	132	107	89	84	81	74	53	35	26
2012	198	187	164	153	149	143	134	129	128	104	85	81	77	70	47	31	23
2011	194	183	161	150	144	138	129	125	123	100	80	79	73	67	41	27	20
2010	191	180	157	147	139	133	125	121	119	97	76	76	69	63	36	22	18
2009	188	177	154	144	134	128	120	116	115	94	71	73	65	59	30	18	15
2008	184	174	150	140	129	124	116	112	111	90	67	71	61	56	24	13	12
2007	181	171	147	137	124	119	112	108	107	87	62	68	57	52	18	9	9
2006	178	168	143	134	119	114	107	104	102	83	58	65	53	48	12	4	6
2005	174	165	140	131	114	110	103	99	98	80	54	63	49	45	6		3
2004	171	161	136	127	109	105	98	95	94	76	49	60	45	41			
2003	168	158	133	124	104	100	94	91	90	73	45	57	41	37			
2002	164	155	129	121	99	95	89	86	85	69	40	54	37	33			
2001	161	152	126	117	95	91	85	82	81	66	36	52	33	30			
2000	158	149	122	114	90	86	81	78	77	63	31	49	29	26			
1999	154	146	119	111	85	81	76	74	73	59	27	46	25	22			
1998	151	143	115	108	80	77	72	69	69	56	23	44	21	19			
1997	148	139	112	104	75	72	67	65	64	52	18	41	17	15			
1996	144	136	108	101	70	67	63	61	60	49	14	38	13	11			
1995	141	133	105	98	65	62	58	57	56	45	9	36	9	8			
1994	138	130	101	95	60	58	54	52	52	42		33					
1993	134	127	98	91	55	53	50	48	47	38		30					
1992	131	124	94	88	50	48	45	44	43	35		27					
1991	128	121	91	85	45	44	41	39	39	32		25					
1990	124	117	87	81	40	39	36	35	35	28		22					
1989	121	114	84	78	36	34	32	31	30	25		19					

1988	118	111	80	75	31	29	28	27	26	21		17					
1987	114	108	77	72	26	25	23	22	22	18		14					
1986	111	105	73	68	21	20	19	18	18	14		11					
1985	108	102	70	65	16	15	14	14	14	11		9					
1984	104	99	66	62													
1983	101	95	63	58													
1982	98	92	59	55													
1981	94	89	56	52													
1980	91	86	52	49													
1979	88	83	49	45													
1978	84	80	45	42													
1977	81	77	42	39													
1976	78	73	38	36													
1975	74	70	35	32													
1974	71	67															
1973	68	64															
1972	64	61															
1971	61	58															
1970	58	55															
1969	54	51															
1968	51	48															
1967	48	45															
1966	44	42															
50 이상	41	39															

④ 개별공시지가 50,000원 초과 ~ 10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조 번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212	201	179	167	167	160	150	145	144	117	100	92	92	83	67	50	33
2014	209	198	175	162	162	156	146	141	139	113	96	89	88	80	61	45	30
2013	206	194	172	157	157	151	141	137	135	110	91	86	83	76	55	41	27
2012	202	191	168	152	152	146	137	132	131	106	87	83	79	72	48	36	24
2011	199	188	165	147	147	141	132	128	126	103	82	81	75	68	42	32	21
2010	195	185	161	142	142	136	128	124	122	99	77	78	71	64	36	27	18
2009	192	181	157	137	137	132	123	119	118	96	73	75	67	61	30	23	15
2008	189	178	154	132	132	127	119	115	113	92	68	72	63	57	24	18	12
2007	185	175	150	127	127	122	114	110	109	89	64	70	59	53	18	14	9
2006	182	172	147	122	122	117	110	106	105	85	59	67	54	49	12	9	6
2005	178	169	143	117	117	112	105	102	100	82	55	64	50	46	6	5	3
2004	175	165	139	112	112	107	101	97	96	78	50	61	46	42			
2003	172	162	136	107	107	103	96	93	92	75	46	59	42	38			
2002	168	159	132	102	102	98	92	88	87	71	41	56	38	34			
2001	165	156	129	97	97	93	87	84	83	68	37	53	34	31			
2000	161	152	125	92	92	88	83	80	79	64	32	50	29	27			
1999	158	149	122	87	87	83	78	75	74	61	28	47	25	23			
1998	155	146	118	82	82	78	73	71	70	57	23	45	21	19			
1997	151	143	114	77	77	74	69	67	66	53	19	42	17	15			
1996	148	140	111	72	72	69	64	62	62	50	14	39	13	12			
1995	144	136	107	67	67	64	60	58	57	46	10	36	9	8			
1994	141	133	104	62	62	59	55	53	53	43		34					
1993	138	130	100	57	57	54	51	49	49	39		31					
1992	134	127	96	51	51	49	46	45	44	36		28					
1991	131	123	93	46	46	45	42	40	40	32		25					
1990	127	120	89	41	41	40	37	36	36	29		23					
1989	124	117	86	36	36	35	33	32	31	25		20					

1988	120	114	82	31	31	30	28	27	27	22		17					
1987	117	111	78	26	26	25	24	23	23	18		14					
1986	114	107	75	21	21	20	19	18	18	15		11					
1985	110	104	71	16	16	16	15	14	14	11		9					
1984	107	101	68														
1983	103	98	64														
1982	100	94	61														
1981	97	91	57														
1980	93	88	53														
1979	90	85	50														
1978	86	82	46														
1977	83	78	43														
1976	80	75	39														
1975	76	72	35														
1974	73	69															
1973	69	66															
1972	66	62															
1971	63	59															
1970	59	56															
1969	56	53															
1968	52	49															
1967	49	46															
1966	46	43															
50 이상	42	40															

⑤ 개별공시지가 100,000원 초과 ~ 15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 조 번 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217	205	183	171	171	164	154	149	147	120	102	94	94	85	68	51	34
2014	214	202	179	168	166	159	149	144	143	116	98	91	90	81	62	46	31
2013	210	199	176	164	161	154	145	140	138	112	93	88	85	78	56	42	28
2012	207	196	172	161	156	149	140	135	134	109	89	85	81	74	50	37	25
2011	203	192	168	157	151	144	135	131	129	105	84	83	77	70	43	32	21
2010	200	189	165	154	145	140	131	126	125	102	79	80	73	66	37	28	18
2009	197	186	161	151	140	135	126	122	121	98	75	77	68	62	31	23	15
2008	193	182	157	147	135	130	122	117	116	94	70	74	64	58	25	19	12
2007	190	179	154	144	130	125	117	113	112	91	65	71	60	54	19	14	9
2006	186	176	150	140	125	120	112	108	107	87	61	68	56	51	13	9	6
2005	183	172	146	137	120	115	108	104	103	84	56	66	51	47	6	5	3
2004	179	169	143	133	114	110	103	100	98	80	51	63	47	43			
2003	176	166	139	130	109	105	98	95	94	76	47	60	43	39			
2002	172	163	135	126	104	100	94	91	90	73	42	57	39	35			
2001	169	159	132	123	99	95	89	86	85	69	38	54	34	31			
2000	165	156	128	120	94	90	84	82	81	66	33	51	30	27			
1999	162	153	124	116	89	85	80	77	76	62	28	49	26	24			
1998	158	149	121	113	84	80	75	73	72	58	24	46	22	20			
1997	155	146	117	109	78	75	71	68	67	55	19	43	17	16			
1996	151	143	113	106	73	70	66	64	63	51	14	40	13	12			
1995	148	140	110	102	68	65	61	59	59	48	10	37	9	8			
1994	144	136	106	99	63	60	57	55	54	44		34					
1993	141	133	102	96	58	56	52	50	50	40		32					
1992	137	130	99	92	53	51	47	46	45	37		29					
1991	134	126	95	89	48	46	43	41	41	33		26					
1990	130	123	91	85	42	41	38	37	36	30		23					
1989	127	120	88	82	37	36	33	32	32	26		20					

1988	123	116	84	78	32	31	29	28	28	22		17					
1987	120	113	80	75	27	26	24	23	23	19		15					
1986	116	110	77	72	22	21	20	19	19	15		12					
1985	113	107	73	68	17	16	15	14	14	12		9					
1984	109	103	69	65													
1983	106	100	66	61													
1982	102	97	62	58													
1981	99	93	58	54													
1980	95	90	55	51													
1979	92	87	51	48													
1978	88	84	47	44													
1977	85	80	44	41													
1976	81	77	40	37													
1975	78	74	36	34													
1974	74	70															
1973	71	67															
1972	67	64															
1971	64	60															
1970	61	57															
1969	57	54															
1968	54	51															
1967	50	47															
1966	47	44															
50 이상	43	41															

⑥ 개별공시지가 150,000원 초과 ~ 20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 조 번 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222	210	187	175	175	168	157	152	150	122	105	96	96	87	70	52	35
2014	219	207	184	171	170	163	153	148	146	119	100	93	92	83	63	47	31
2013	215	203	180	168	164	158	148	143	141	115	95	90	87	79	57	43	28
2012	212	200	176	164	159	153	143	138	137	111	91	87	83	75	51	38	25
2011	208	197	172	161	154	148	138	134	132	108	86	84	79	71	44	33	22
2010	205	193	169	157	149	143	134	129	128	104	81	82	74	68	38	28	19
2009	201	190	165	154	143	138	129	125	123	100	76	79	70	64	32	24	16
2008	197	187	161	150	138	133	124	120	119	97	72	76	66	60	25	19	12
2007	194	183	157	147	133	128	120	116	114	93	67	73	61	56	19	14	9
2006	190	180	153	143	128	122	115	111	110	89	62	70	57	52	13	10	6
2005	187	176	150	140	122	117	110	106	105	85	57	67	53	48	7	5	3
2004	183	173	146	136	117	112	105	102	101	82	53	64	48	44			
2003	180	170	142	133	112	107	101	97	96	78	48	61	44	40			
2002	176	166	138	129	107	102	96	93	92	74	43	58	40	36			
2001	172	163	135	126	101	97	91	88	87	71	38	55	35	32			
2000	169	160	131	122	96	92	86	83	83	67	34	53	31	28			
1999	165	156	127	119	91	87	82	79	78	63	29	50	27	24			
1998	162	153	123	115	85	82	77	74	73	60	24	47	22	20			
1997	158	149	120	112	80	77	72	70	69	56	20	44	18	16			
1996	155	146	116	108	75	72	67	65	64	52	15	41	13	12			
1995	151	143	112	105	70	67	63	61	60	49	10	38	9	8			
1994	147	139	108	101	64	62	58	56	55	45		35					
1993	144	136	105	98	59	57	53	51	51	41		32					
1992	140	133	101	94	54	52	48	47	46	38		29					
1991	137	129	97	91	49	47	44	42	42	34		27					
1990	133	126	93	87	43	42	39	38	37	30		24					
1989	130	122	90	84	38	37	34	33	33	27		21					

1988	126	119	86	80	33	32	30	29	28	23		18					
1987	123	116	82	77	28	26	25	24	24	19		15					
1986	119	112	78	73	22	21	20	19	19	15		12					
1985	115	109	75	70	17	16	15	15	15	12		9					
1984	112	106	71	66													
1983	108	102	67	63													
1982	105	99	63	59													
1981	101	96	60	56													
1980	98	92	56	52													
1979	94	89	52	49													
1978	90	85	48	45													
1977	87	82	45	42													
1976	83	79	41	38													
1975	80	75	37	35													
1974	76	72															
1973	73	69															
1972	69	65															
1971	65	62															
1970	62	58															
1969	58	55															
1968	55	52															
1967	51	48															
1966	48	45															
50 이상	44	42															

⑦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초과 ~ 350,000원 이하

(단위 : 천원)

건축 년도	구 조 번 호																
	1	2	3	4	4-1	5	6	7	8	9	10	11	11-1	12	13	14	15
2015	227	215	191	179	179	172	161	156	154	125	107	98	98	89	71	53	35
2014	224	211	188	175	174	167	156	151	149	121	102	95	94	85	65	48	32
2013	220	208	184	172	168	161	151	146	145	118	97	92	89	81	58	44	29
2012	216	204	180	168	163	156	146	142	140	114	93	89	85	77	52	39	26
2011	213	201	176	165	157	151	142	137	135	110	88	86	80	73	45	34	22
2010	209	198	172	161	152	146	137	132	131	106	83	83	76	69	39	29	19
2009	205	194	168	157	147	141	132	127	126	102	78	80	72	65	33	24	16
2008	202	191	165	154	141	136	127	123	121	99	73	77	67	61	26	19	13
2007	198	187	161	150	136	130	122	118	117	95	68	74	63	57	20	15	10
2006	195	184	157	147	130	125	117	113	112	91	64	72	58	53	13	10	6
2005	191	180	153	143	125	120	113	109	107	87	59	69	54	49	7	5	3
2004	187	177	149	139	120	115	108	104	103	84	54	66	49	45			
2003	184	173	145	136	114	110	103	99	98	80	49	63	45	41			
2002	180	170	142	132	109	105	98	95	94	76	44	60	40	37			
2001	176	167	138	129	104	99	93	90	89	72	39	57	36	33			
2000	173	163	134	125	98	94	88	85	84	69	34	54	32	29			
1999	169	160	130	121	93	89	83	81	80	65	30	51	27	25			
1998	165	156	126	118	87	84	79	76	75	61	25	48	23	21			
1997	162	153	122	114	82	79	74	71	70	57	20	45	18	17			
1996	158	149	119	111	77	74	69	67	66	53	15	42	14	13			
1995	154	146	115	107	71	68	64	62	61	50	10	39	9	8			
1994	151	142	111	104	66	63	59	57	57	46		36					
1993	147	139	107	100	60	58	54	53	52	42		33					
1992	143	136	103	96	55	53	50	48	47	38		30					
1991	140	132	99	93	50	48	45	43	43	35		27					
1990	136	129	95	89	44	43	40	39	38	31		24					
1989	133	125	92	86	39	37	35	34	33	27		21					

1988	129	122	88	82	34	32	30	29	29	23		18					
1987	125	118	84	78	28	27	25	24	24	20		15					
1986	122	115	80	75	23	22	20	20	20	16		12					
1985	118	111	76	71	17	17	16	15	15	12		9					
1984	114	108	72	68													
1983	111	105	69	64													
1982	107	101	65	60													
1981	103	98	61	57													
1980	100	94	57	53													
1979	96	91	53	50													
1978	92	87	49	46													
1977	89	84	46	43													
1976	85	80	42	39													
1975	82	77	38	35													
1974	78	74															
1973	74	70															
1972	71	67															
1971	67	63															
1970	63	60															
1969	60	56															
1968	56	53															
1967	52	49															
1966	49	46															
50 이상	45	43															

참고4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현황

(단위 : %)

구 분		조례 제정여부					비고
시·도	시·군	미제정	제정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부산	-					20	자연환경보전 지역만 존재
대구	-		50	50	50	50	
인천	-		60	60	60	60	
광주	-		50	50	50	50	
대전	-		50	50	50	50	
울산	-		50	50	50	50	
세종			60	60	60	60	
경기	수원	○					용도구역 없음
	성남	○					용도구역 없음
	부천	○					용도구역 없음
	용인		60	60	60	60	
	안산		60	60	60	60	
	안양	○					용도구역 없음
	평택		60	60	60	60	
	시흥	○					용도구역 없음
	화성		60	60	60	60	
	광명	○					용도구역 없음
	군포	○					용도구역 없음
	광주		60	60	60	60	
	김포		50	50	50	50	상향 계획 (‘15.12월)
	이천		60	60	60	60	
	안성		60	60	60	60	
오산	○					용도구역 없음	
하남	○					용도구역 없음	

구 분		조례 제정여부					비 고
시·도	시·군	미 제 정	제 정				
			보전관리 지 역	생산관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의왕	○					용도구역 없음
	여주		60	60	60	60	
	양평		60	60	60	60	
	과천	○					용도구역 없음
	고양		50	50	50	50	상향 계획 (15.12월)
	남양주		60	60	60	60	
	의정부	○					용도구역 없음
	과주		60	60	60	60	
	구리		50	50	50	50	
	양주		60	60	60	60	
	포천		60	60	60	60	
	동두천		60	60	60	60	
	가평		60	60	60	60	
	연천		60	60	60	60	
강원	춘천		60	60	60	60	
	원주		60	60	60	60	
	강릉		60	60	60	60	
	동해		60	60	60	60	
	태백		60	60	60	60	
	속초		60	60	60	60	
	삼척		60	60	60	60	
	홍천		60	60	60	60	
	횡성		60	60	60	60	
	영월		60	60	60	60	
	평창		60	60	60	60	
	정선		60	60	60	60	
철원		60	60	60	60		

구 분		조례 제정여부					비고
시·도	시·군	미제정	제정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화천		60	60	60	60	
	양구		60	60	60	60	
	인제		60	60	60	60	
	고성		60	60	60	60	
	양양		60	60	60	60	
충북	청주		60	60	60	60	
	충주		60	60	60	60	
	제천		60	60	60	60	
	보은		60	60	60	60	
	옥천		60	60	60	60	
	영동		60	60	60	60	
	증평		60	60	60	60	
	진천		60	60	60	60	
	괴산		60	60	60	60	
	음성		60	60	60	60	
	단양		60	60	60	60	
충남	천안		60	60	60	60	
	공주		60	60	60	60	
	보령		60	60	60	60	
	아산		60	60	60	60	
	서산		60	60	60	60	
	논산		60	60	60	60	
	계룡					50	자연환경보전 지역만 존재
	당진		60	60	60	60	
	금산		60	60	60	60	
	부여		60	60	60	60	
	서천		60	60	60	60	

구 분		조례 제정여부					비고
시·도	시·군	미 제정	제정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청양		60	60	60	60	
	홍성		60	60	60	60	
	예산		60	60	60	60	
	태안		60	60	60	60	
전북	전주		50	50	50	50	
	군산		60	60	60	60	
	익산		50	50	50	50	
	정읍		60	60	60	60	
	남원		60	60	60	60	
	김제		60	60	60	60	
	완주		60	60	60	60	
	진안		60	60	60	60	
	무주		60	60	60	60	
	장수		60	60	60	60	
	임실		60	60	60	60	
	순창		60	60	60	60	
	고창		60	60	60	60	
부안		60	60	60	60		
전남	목포	○					용도구역 없음
	여수		60	60	60	60	
	순천		50	50	50	50	상향 계획 (‘15.12월)
	나주		60	60	60	60	
	광양		60	60	60	60	
	담양		60	60	60	60	
	곡성		60	60	60	60	
	구례		60	60	60	60	
고흥		60	60	60	60		

구 분		조례 제정여부					비고
시·도	시·군	미 제정	제정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성		60	60	60	60	
	화순		60	60	60	60	
	장흥		60	60	60	60	
	강진		60	60	60	60	
	해남		60	60	60	60	
	영암		60	60	60	60	
	무안		60	60	60	60	
	함평		60	60	60	60	
	영광		60	60	60	60	
	장성		60	60	60	60	
	완도		60	60	60	60	
	진도		60	60	60	60	
	신안		60	60	60	60	
	경북	포항		60	60	60	60
경주			60	60	60	60	
김천			60	60	60	60	
안동			60	60	60	60	
구미			60	60	60	60	
영주			60	60	60	60	
영천			60	60	60	60	
상주			60	60	60	60	
문경			60	60	60	60	
경산			60	60	60	60	
군위			60	60	60	60	
의성			60	60	60	60	
청송			60	60	60	60	
영양			60	60	60	60	

구 분		조례 제정여부					비고
시·도	시·군	미 제정	제정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영덕		60	60	60	60	
	청도		60	60	60	60	
	고령		60	60	60	60	
	성주		60	60	60	60	
	칠곡		60	60	60	60	
	예천		60	60	60	60	
	봉화		60	60	60	60	
	울진		60	60	60	60	
	울릉		60	60	60	60	
경남	창원		60	60	60	60	
	진주		60	60	60	60	
	통영		50	50	50	50	상향 계획 (‘15.12월)
	사천		60	60	60	60	
	김해		60	60	60	60	
	밀양		60	60	60	60	
	거제		60	60	60	60	
	양산		60	60	60	60	
	의령		60	60	60	60	
	함안		60	60	60	60	
	창녕		60	60	60	60	
	고성		60	60	60	60	
	남해		60	60	60	60	
	하동		60	60	60	60	
	산청		60	60	60	60	
	함양		60	60	60	60	
	거창		50	50	50	50	상향 계획 (‘15.12월)
합천		60	60	60	60		
제주	-		50	50	50	50	